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502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252호)	우재준	2024. 08. 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 회의(2024.11.21.)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491호)	조지연	2024. 11. 12.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 회의(2025.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 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2.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0.)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로 정의하고, 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법에서 정하여 사업자에게 준수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 제57조의2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하는 등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액체나 고체 형 태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 려가 있고, 최근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배 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 여 장착하는 등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 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 에 대한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2조제6호의2·제6호의3 신설).

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시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절차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탈거 등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57조의2제1항).
- 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중개·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먼지는 여과성(濾過性) 먼지와 응축성(凝縮性) 먼지를 포함 한다.
- 6의2. "여과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6의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 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 를 말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건설기계의 점검·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2.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 3.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 4.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제91조제5호 중 "제57조의2를"을 "제57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제57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 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
- 5의3. 제57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

관하거나 저장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6 및 제1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1의5.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제6호의2·제6호의3 및 제7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	6
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먼</u>
	지는 여과성(濾過性) 먼지와
	응축성(凝縮性) 먼지를 포함
	<u>한다.</u>
<u><신 설></u>	6의2. "여과성 먼지"란 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
	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
	지를 말한다.
<u><신 설></u>	6의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
	태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
	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
	시 응축되는 먼지를 말한다.
7. ~ 23. (생 략)	7. ~ 23. (현행과 같음)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
·평가) ① (생 략)	·평가)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u>자동차</u>의 배 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 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 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 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 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 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 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신 설>

오염물질배줄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
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u>①</u>
<u>자동차 및</u>
<u>건설기계</u>
1. (현행과 같음)
1의2. 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
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

2. • 3. (생략) <신 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의3. (생 략)
-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 5. 제57조의2제1항을-----

- 2. 3. (현행과 같음)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 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2.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 3.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 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 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 4.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제91조(벌칙)	

-----.

- 1. ~ 4의3. (현행과 같음)

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 ·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 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 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신 설>

<신 설>

6. ~ 13.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 략) <u><신 설></u>

_		
5의2. 제57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		
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		
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u>자</u>		
5의3. 제57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		
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		
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거나 저장		
한 자		
6. ~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

<신 설>

1의4. · 1의5. (생략)

2.·3. (생략) ② ~⑥ (생략) 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1의5.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 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1의6. · 1의7. (현행 제1호의4 및 제1호의5와 같음) 2. · 3. (현행과 같음)